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신설 및 경력단절예방 사업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18549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통보 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2조)

기본계획의 통보 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자치시가 제외되어 있어,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9조)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제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 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중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5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운영실적 등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별로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권한
2.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계획과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2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앙지원센터의 장 또는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나.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무

다.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무

라.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

마.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조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중앙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의 장 1명 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또는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여성 또는 고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 2명 이상 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평가,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담당자 3명 이상 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사업 홍보 담당자 2명 이상
시설 및 장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회의실을 각 1개 이상 확보할 것 - 중앙지원센터의 인력이 일반사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조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상근 지원센터의 장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또는 경력단절 예방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여성의 구인·구직, 취업지원 또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상담하는 상근 종사자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설 및 장비	- 여성의 구인·구직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임시보육 공간 등의 편의시설과 그 밖에 취업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되, 강의실과 실습실은 훈련생 1명당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원센터가 산업체에서의 현장 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원센터가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현장실습을 하는 산업체는 제외한다)도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는 것

중앙지원센터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다목에 따른 지정취소를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 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법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202